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95
----------	-----

제출연월일 : 2022. 11. 10.

제 출 자 :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22.4.21.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삭제 및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신설 및 개정 사항 반영

- 1) 개정 법률의 제정 목적과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 2)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추가 및 심의 생략 사항의 정비
- 3) 공유재산·물품운영 상황 공개대상 조정
- 4)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제출

나.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규정

- 1)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규정
- 2) 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의 감면범위 확대

3)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감액범위 확대

4)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납부방법 개선

다. 관련법 개정에 따른 자구 정비

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2. 9. 30. ~ 10. 20.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 아님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 5)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6)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의결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유재산의 취득·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총괄재산관리자(이하“총괄재산관리관””을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으로, “책임공무원(이하“재산관리관””을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16조”를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으로,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심의회”를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차례에 한하여”를 “차례”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심의회의 운영)”을 “(심의회의 운영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0조 및 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용도 폐지

제6조 전단 중 “이를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를 “그 서식과 작성 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이를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의2 중 “현재액, 그 밖에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현재액”으로, “「지방재정법」 제60조를 따른다”를 “「지방재정법」 제60조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관리”를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2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작성하며, 총괄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공유임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및 “1건당 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제13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로,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를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 채납된”을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수익허”를 각각 “사용허”로 하며, 같은 항 중 “매각함이”를 “매각하는 것이”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허”를 각각 “사용허”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행정재산을”을 “행정재산의 관리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수탁자“ 라”를 ““관리수탁자”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수익허”를 “사용허”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 심의회”를 “심의회”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수익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를 “영 제13조제3항제8호·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로, “외국인투자 지역”을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산업단지안”을 “산업단지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필요 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28조제4항 단서 중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를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 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벤처기업 전용단지”를 “벤처기업전용단지”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로, “인구집중유발 시설”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일정규모”를 “일정 규모”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초지법 시행령」 별표 1”을 “「초지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법인등 2인이”로, “금액”을 “금액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제2호라목 중 “4층이상”을 “4층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다목 중 “지하3층이하는”을 각각 “지하3층 이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판매를”을 “판매하기”로, “사용·수익허가하는”을 “사용허가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⑥ 영 제17조제6항제2호·제4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유 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50퍼센트로 한다.

⑦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은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10

0퍼센트로 한다.

제33조의 제목“(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반환절차”를 “반환 절차”로 한다.

제34조 중 “사용·수익허가 및”을 “사용허가 또는”으로, “이상 증가하여”를 “이상”으로,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를 “그 전부를 감액조정 할 수 있다”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로, “사용·수익 개시일”을 “사용 개시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초과 :”를 각각 “초과:”로 하며, 같은 호 중 “3회”를 “4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초과 :”를 “초과:”로, “4회”를 “6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중 “대부 정리부”를 “대부정리부”로 한다.

제37조 중 “경우에도”를 “경우를 포함하여”로, “작성보관함”을 “작성·보관함”으로 한다.

제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분할납부 하게”를 “분할납부하게”로,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항과 같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2항) 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로, “구청장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5년 이내 기간으로 한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매각 할”을 “매각 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를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국가산업단지내”를 “국가산업단지 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투자지역내”를 “투자지역 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용지내”를 “용지 내”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을 “따른 수의계약으로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써”를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로, “부지로서”를 “부지로”로,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 할”을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로,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말함, 법률 제12649호,2014.5.21)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전”으로, “두배”를 “두 배”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의한”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로 한다.

제41조 중 “분양형신탁,임대형신탁,혼합형신탁”을 “분양형신탁, 임대형신탁, 혼합형신탁”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위치·규모”를 “위치, 규모,”로, “청사정비 계획”을 “청사정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해·무너질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를 “재해, 무너질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준설계 면적기준”을 “표준 설계면 적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증·감등”을 “증감 등”으로 하 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상”을 “별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청사등”을 “청사 등”으로, “별표상 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지”로 한다.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 조성 및 보안구역 설정

제48조 중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를 “경우 에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로 한다.

제50조 중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구청장·부구청장”을 “장에서 “관 사”라 함은 구청장, 부구청장”으로, “밖에”를 “밖의”로 한다.

제51조 중 “관사 : 구청장”을 “관사: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관 사 : 부구청장”을 “관사: 부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중 “관사 : 1급” 을 “관사: 1급”으로 한다.

제52조 단서 중 “1급·2급”을 “1급 및 2급”으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방지
3. 청결 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 실한 납부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 호에 해당하는”을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있다”를 “있으며, 2호부터 8호까지는 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관리비(단, 1급, 2급 관사만 해당한다.)”를 “관리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응접셋트”를 “응접 세트”로, “경비(단, 1급, 2급 관사만 해당한다.)”를 “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공동관리비(단, 1급, 2급 관사만 해당한다.)”를 “공동관리비”로 한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 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3. 보일러 운영비

5. 전기요금

6. 전화요금

7. 수도요금

제57조 중 “일시”를 “일시적으로”로 한다.

제58조 중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6조에 따라”로, “등재”를 “등재 및”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그날 현재까지발생한”을 “그날까지 발생한”으로, “다

음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밖에”를 “밖의”로 한다.

제60조 중 “관사의 사용도중”을 “관사를 사용하던 도중”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납부 하고자”를 “납부하고자”로 한다.

제63조의2 중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을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를 따르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분의10 상당액”을 “100분의1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5 상당액”을 “100분의5”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해당하는”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개하거나, 누설 하여서”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로 한다.

제66조 전단 중 “분할 할”을 “분할할”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분할하며”를 “분할하며,”로,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67조 중 “것 외의 사항”을 “사항 외”로, “질의회신·지침·편람”을 “질의회신, 지침, 편람”으로 한다.

별표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 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u>공유재산의 취득·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u>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관리책임)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u>총괄재산관리자(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u>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p>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에게 <u>구유재산관리</u></p>	<p>제1조(목적) ----- ----- ----- ----- <u>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것</u>----- -----.</p> <p>제2조(관리책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u>----- ----- -----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p> <p>③ <u>제2항에 따른</u> ----- ----- -----</p> <p>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 -----</p>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
임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구청장
이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
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④ (생략)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⑥ (생략)

제4조의2(심의회의 운영) ① ~
⑩ (생략)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공
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신 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의3-----
-----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심의회-----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차례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심의회의 운영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0조 및 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
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용도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생략)

5.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생략)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5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인 행정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3.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5. -- 밖에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여야 하며,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임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라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

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작성하며,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공유임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및 “1건당 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 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생략)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해서는 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 -----

----- 재산관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

산은 기부채납된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

----- 사용허-----

② -----

----- 사용허-----

니 된다.

1. 용도폐지 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생략)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 매각하는 것이

제20조(사용허가) -----

-- 사용허-----

1. ~ 4. (현행과 같음)

5. 사용허-----

6. 사용허-----

7.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

-- 사용허가부-----

-----.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 행정재산의 관리를 -----

-----.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轉貸)받은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② -----

“관리수탁자”라 -----

-----.

③ ----- 사용허-----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현행과 같음)

② -----

심의회-----
-----.

1. ~ 4. (생략)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
우)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
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2. (생략)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
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
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국가산업단
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7조
의3 및 제8조에 따른 공유재
산

3.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1. ~ 4.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제29조
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
항제2호-----

-----.

1.·2. (현행과 같음)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
매각 대상 등) -----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3.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
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에 따른 대구광역시장이 지정
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
산

5. 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
산

6.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
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연 1,000분의 20 이상으
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
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
조-----

-- 외국인투자지역-----
--

5. -----
---- 산업단지 안-----
--

6. -----

----- 필요하다고 -----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⑤ -----

한다.

1. (생략)
2. 삭제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생략)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생략)
8.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1. (현행과 같음)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
4. (현행과 같음)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인구집중유발시설-----
6. ----- 일정 규모-----
7. (현행과 같음)
8.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

③ (생략)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② (생략)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지상 3층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 다. (생략)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생략)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나. (생략)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③ (현행과 같음)

④ -----
----- 감정평가법
인등-----

-----.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4층 이상-----

3. (현행과 같음)

4.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지하3층 이하는 -----

③ (생략)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⑤ 제25조의2에 따라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해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한다.

⑥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에 따른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50퍼센트로 한다.

<신설>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⑤ -----

----- 판매하기 -----
--- 사용허가 하는 -----
-----.

⑥ 영 제17조제6항제2호·제4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50퍼센트로 한다.

⑦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은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료 등의 100퍼센트로 한다.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

가 및 대부) ① -----

----- 사용허가 또
는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용
허가-----

-----.

④ ----- 반환 절차-----

-----.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의 납부기한은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수익 개시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 등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 사용허가 또는 -----

----- 이상 -----
----- 그
전부를 감액조정 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

-- 대부 또는 사용허가-----

----- 사용 개시일 -----
-----.

② -----

-----.

1. ----- 초과: -----
--
2. ----- 초과: ----- 4회 -
--
3. ----- 초과: ----- 6회 -

분납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미 부과하였거나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한꺼번에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
----- 대부정리부-----

--.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대부계약서) -----
----- 경우를 포함하여 ----- 작성·보관함-----
-----.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 분할납부하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신 설>

게 -----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5년 이내 기간으로 한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채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

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
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삭 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분할납부를 5년 이내 기간
으로 한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
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구가 계
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
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
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
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
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

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10년 이내 기간으로 한다.

1. (생략)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③ -----

-----.

1. (현행과 같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
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
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
각하는 때

4. (생략)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
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
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
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
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
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국가산
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생략)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
조제2호-----

4. (현행과 같음)

제39조(조성원가 매각) -----
-- 따라 -----
매각할 -----

-----.

1. -----

-----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
방자치단체-----

----- 국가산업단지
내-----

2. (현행과 같음)

3. -----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
지역내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
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
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써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
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
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
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
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
시설소유자에게 매각 할 때로
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
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
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 투자
지역 내-----

4. -----
----- 용지 내-----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
----- 따른 수의계약으로 하
는 -----
-----.

2. -----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 부지로 -----
----- 1 이상--

3. -----
----- 생산
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
----- 1
이상-----

4. -----

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부동산개발신탁(분양형신탁, 임대형신탁, 혼합형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사업소·동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청사정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무너질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 6. (생략)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분양형신탁, 임대형신탁, 혼합형신탁-----
-----.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
----- 위치, 규모, -----

----- 청사정비계획-----
-----.

② -----
----- 재해, 무너질 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 -----

----- 표준 설계면적기준-----

-----.

1. ----- 증감 등 -----
2. ~ 6. (현행과 같음)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 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8조(대구광역시건축위원회 심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구광역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구청장·부구청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 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 : 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② -----

----- 별표 -----
-----.

③ 청사 등 -----

-----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지 -----
-----.

제48조(대구광역시건축위원회 심의) -----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
-----.

제50조(정의) -- 장에서 “관사”라 함은 구청장, 부구청장 -----
-- 밖의 -----
-----.

제51조(관사의 구분) -----
-----.

- 관사: 구청장 -----
- 관사: 부구청장 -----

3. 3급 관사 : 1급 및 2급 관사
이외의 관사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구
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
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
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
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
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
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
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
의 성실한 납부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
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
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관사: 1급 -----

제52조(사용허가) -----

----- . ----- 1
급 및 2급 -----
-----.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
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
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
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
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방지
3. 청결 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
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
의 성실한 납부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
각 호에 해당하는 -----
----- 있으며, 2호
부터 8호까지는 1급 및 2급 관
사만 해당한다.

<p>1. <u>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u></p> <p>2. <u>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단, 1급, 2급 관사만 해당한다.)</u></p> <p>3. <u>보일러 운영비(단, 1급, 2급 관사만 해당한다.)</u></p> <p>4. <u>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단, 1급, 2급 관사만 해당한다.)</u></p> <p>5. <u>전기요금(단, 1급, 2급 관사만 해당한다.)</u></p> <p>6. <u>전화요금(단, 1급, 2급 관사만 해당한다.)</u></p> <p>7. <u>수도요금(단, 1급, 2급 관사만 해당한다.)</u></p> <p>8. <u>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 관리비(단, 1급, 2급 관사만 해당한다.)</u></p> <p>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p>	<p>1. <u>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u></p> <p>2. ----- ----- <u>관리비</u></p> <p>3. <u>보일러 운영비</u></p> <p>4. <u>응접세트</u>----- ----- -- <u>경비</u></p> <p>5. <u>전기요금</u></p> <p>6. <u>전화요금</u></p> <p>7. <u>수도요금</u></p> <p>8. ----- <u>공동 관리비</u></p> <p>제57조(사용료의 면제) -----</p>
---	--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 대장을 따로 갖추어 두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 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

----- 일시적으로 -----

제58조(비품의 관리) -----

----- 제56조에 따라 -----

----- 등재 및 -----.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그날까지 발생한 -----

----- 다음 각 호의 사항 -----

----- 밖의 -----

제60조(변상조치) 관사를 사용하던 도중-----

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
한다)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훼손
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
상한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삭 제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
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
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
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
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② -----

--- 납부하고자 -----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 사용료, 대
부료, 매각대금 -----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
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
를 따르되, 총 보상금은 3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10 상당액으로 한다.

가.·나. (생략)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5 상당액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할)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할이

1. -----

-- 100분의 10-----
--.

가.·나. (현행과 같음)

2. -----

----- 100분의5-----
-----.

③ ----- 따른 -----

-----.

④ -----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
-----.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할) -----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제67조(준용)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 분할 ----- .

----- 분
할하며, -----

----- 감정평가법인등-----
-----.

제67조(준용) -----
----- 사항 외

질의회신, 지침, 편람 -----
-----.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

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 기준
2.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3.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의 계획적인 관리·처분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제17조(사용료 감면)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

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 부칙 < 대통령령 제32601호, 2022. 4. 2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제3호, 제7조제7항제2호, 제10조의3, 제33조, 제40조, 제78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각 호,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2023년 9월 30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